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이하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 운영하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및 추진 절차와 조직을 정하여 발전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추진 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대학발전계획”이라 함은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대학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세부실행계획 및 예산을 포괄하여 말한다.

제3조(조직과 기능) ①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며 그 성과를 확인하여 대학의 정책과 제도, 교육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발전계획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을 둔다.

② 위원은 기획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총장, 간사는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2., 2020. 11. 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개정 2020. 3. 16., 2020. 11. 9.)

1.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내·외 의견 수렴 및 분석
2.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내·외 여건 조사 및 분석
3. 발전계획 추진조직 및 예산확보, 성과관리 점검 및 환류
4. 발전계획과 학사구조개혁(학부(과), 전공 개편 및 정원 운영)의 연계성 확보
5. 행정부서, 부설기관, 단과대학 및 학과 단위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대학경영 방향수립, 재정운용, 대외협력 등에 관한 발전계획 사항
7. 발전계획 연간운영계획서 및 운영성과보고서 심의 의결
8. 기타 대학 발전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운영, 성과평가, 환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 발전계획실무위원회, 발전계획 자문단, 주니어보드, 미래전략위원회, 호서발전연구회, 단과대 발전계획위원회, 대학원 발전계획위원회, 사업예산심의위원회, 국책사업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관리 위원회, 교육성과관리센터, 국책사업단, 평가전략팀, 교육혁신팀, 대학혁신팀, 홍보팀, 교무팀, 총무팀, 기획예산팀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 3. 16., 2020. 4. 1., 2020. 11. 9.)

제4조 (발전계획 수립) ① 총장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조직 외에 별도의 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1.외부환경분석(지역특화분야 및 산업현황), 2.내부역량진단, 3.학생, 교수, 직원, 지역사회 및 산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분석, 4.이전 발전계획 성과평가 등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6.)

③ 총장은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발전계획 추진 및 환류) ① 대학발전계획추진위원회는 대학 경영을 둘러싼 다양한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매 학년도 초 대학발전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전달하며, 구체적인 실무는 기획예산팀에서 전담한다. (개정 2020. 11. 9.)

② 각 부서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발전계획을 추진한다.(개정 2020. 3. 16.)

③ 각 부서는 사업 종료 후 부서별 발전계획 추진결과를 자체평가한 뒤 기획예산팀에 제출하고, 기획예산팀은 발전계획성과평가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 발전계획 연차평가를 시행한다.(신설 2020. 3. 16.)

- ④ 교육성과관리센터는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부서별 개선계획 및 이행결과보고 접수를 1년 주기로 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획예산팀에 제출한다.(개정 2020. 11. 9.)
- ⑤ 연차평가에는 발전계획 성과지표 달성 정량평가, 추진내용 정성평가,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0. 3. 16.)
- ⑥ 연차평가는 1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 3. 16.)
- ⑦ 연차평가의 결과는 단기(1년)와 중기(3년 이상)로 구분하여 환류하고, 단기환류로 추진과제별 세부 사업과제 개발·조정 수 있고 중기환류로 전략·추진과제 및 성과목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발전계획의 단계별(1단계, 2단계, 3단계)로 목표 수립 및 조정, 전략과제, 성과목표를 개발·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0. 3. 16.)
- ⑧ 연차별 발전계획 추진성과 평가결과는 차년도 연차계획에 반영하여 발전계획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추진되도록 한다.
- ⑨ 기획예산팀은 관련 부서에 발전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부서는 기획예산팀의 협조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⑩ 평가전략팀 부서별 발전계획의 실행 결과를 KPI(핵심성과지표)를 통해 평가하며, 그 결과를 직원평가위원회를 통해 단위부서와 그 소속 구성원의 인사평가 및 성과급에 반영한다. (개정 2020. 11. 9.)

제6조 (발전계획예산 확보 및 집행) ① 대학은 발전계획이 실현가능하도록 발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6., 2020. 11. 9.)

- ② 각 부서는 예산 편성시 발전계획 과제에 해당하는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③ 기획예산팀은 사업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발전계획 과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 발전계획을 위한 별도의 특별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 ④ 국책사업관리위원은 발전계획 예산으로 편성된 국책사업 예산의 사업간 중복 편성 및 집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책사업예산 사용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편성된 발전계획 예산을 심의할 수 있다.

부 칙(2018.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본 규정의 제정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발전위원회 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2018. 12. 12)

제1조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팀’을 ‘기획전략팀’으로 한다.

부 칙(2020. 3. 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발전계획추진위원회 산하기관의 구성 및 기능

1. 조직도



2. 구성 및 기능

조직명	지원조직	구성 및 기능
발전계획 실무위원회	기획예산팀	<p><구성> 각 부서별 부처장 또는 팀장, 발전계획 관련 분야 전문역량 및 경험 보유자, 국책사업 및 정책연구 참여 경험자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 간사는 기획예산팀장으로 함.</p> <p><기능> 발전계획의 사업별 추진관리 및 모니터링, 발전계획 관련 대내외 자료 조사 및 분석, 구성원 의견수렴, 발전계획의 추진 과정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p>
미래전략 위원회	기획예산팀	<p><구성> 대학의 교육, 경영, 시설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원 추천을 거쳐 총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기획예산팀장으로 함.</p> <p><기능> 발전계획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외부환경분석(지역특화분야 및 산업현황), 내부역량진단, 교육수요자(학생, 교수, 직원, 지역사회, 산업체 등) 의견 수렴, 이전 발전계획의 성과 평가</p>

조직명	지원조직	구성 및 기능
호서발전 연구회	기획예산팀	<p><구성> 대학의 교육, 경영, 시설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직원으로 교무위원의 추천을 통해 40인 이내로 구성</p> <p><기능> 발전계획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외부환경분석(지역특화분야 및 산업현황), 내부역량진단, 교육수요자(학생, 교수, 직원, 지역사회, 산업체 등) 의견 수렴, 이전 발전계획의 성과 평가</p>
주니어보드	기획예산팀	<p><구성> 임용 후 3년 미만의 전임교원 중 대학의 교육, 경영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원 추천을 거쳐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기획부처장으로 함.</p> <p><기능> 대학 발전계획의 개선방향, 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p>
단과대 발전계획 위원회	기획예산팀	<p><구성> 단과대학 학장, 부학장, 학부장, 학과장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기획예산팀장으로 함.</p> <p><기능> 대학과 연계된 단과대학의 비전, 교육목표, 발전전략에 대한 의견 제시, 단과대학별 발전계획의 전략과제 설정 및 실행</p>
대학원 발전계획 위원회	기획예산팀	<p><구성> 대학원장, 전공 관련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 간사는 기획예산팀장으로 함.</p> <p><기능> 대학과 연계된 단과대학의 비전, 교육목표, 발전전략에 대한 의견 제시, 단과대학별 발전계획의 전략과제 설정 및 실행</p>
사업 예산심의 위원회	기획예산팀	<p><구성> 대학본부 보직자, 교수 대표, 직원 대표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 간사는 기획예산팀장으로 함.</p> <p><기능> 대학 발전계획 예산편성 심의, 사업별 예산에 대한 사업별 우선순위, 타당성 평가</p>
국책사업관리 위원회	평가전략팀	<p><구성>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관리규정 제3조(구성)</p> <p><기능> 대학발전계획과 관련된 국책사업 예산 편성, 점검, 평가에 대한 사항[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관리규정 제4조(업무)]</p>
성과평가 위원회	대학혁신팀	<p><구성> 대학의 교육, 경영, 시설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학본부 부처장 또는 팀장, 부속기관 센터장, 교수 대표, 학생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사부총장, 간사는 대학혁신팀장으로 함.</p> <p><기능> 대학발전계획의 성과지표(KPI)의 조정, 발전전략과제 모</p>

조직명	지원조직	구성 및 기능
		니터링, 연차별 성과평가 및 보고서 작성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관리 위원회	교육성과 관리센터	<구성>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관리 규정 제7조(위원회 구성) <기능> 대학발전계획 관련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시행, 실적 확인 및 결과 분석, 심의[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관리 규정 제7조(위원회 구성)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교육성과 관리센터		<기능> 대학발전계획 관련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시행 및 환류, 교육성과 분석 및 환류, 부서별 개선계획 요청 및 이행결과 보고서 접수, 교육부문 자체평가 및 보고[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제27조의 14(교육성과관리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 규정]
교육혁신팀		<기능> 대학발전계획의 교육부문(교수학습, 진로 및 심리상담, 이러닝교육)의 혁신을 위한 수요조사, 교육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수요 및 만족도 조사[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제27조의 5(교육혁신팀)]
국책사업단		<기능> 대학 발전계획에 따른 전략과제의 세부과제별 사업계획의 추진과 성과평가 및 환류, 내·외부 구성원 대상 대학 발전계획 성과 확산 및 공유
대학혁신팀		<기능> 대학 발전계획에 따른 전략과제의 세부과제별 사업계획의 추진과 성과평가 및 환류, 내·외부 구성원 대상 대학 발전계획 성과 확산 및 공유, 성과평가위원회 관리
평가전략팀		<기능> 부서별 대학 발전계획의 성과지표(KPI)의 달성도 평가, 발전계획 및 세부사업 참여 교원에 대한 교원 업적 평가
홍보팀		<기능> 발전계획 홈페이지 및 SNS 관리
총무팀		<기능> 부서별 대학 발전계획 성과지표(KPI) 달성도 평가 결과의 직원 인사 평가 및 성과급 평가에 반영
교무팀		<기능> 발전계획 및 세부사업 참여 교원에 대한 업적 평가 결과의 교원 인사 평가 및 연봉제 평가에 반영
기획예산팀		<기능> 대학 발전계획의 수립, 추진에 대한 총괄 관리 업무[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제28조의 6(기획예산팀)]